3 대부업법

(서민금융과) 과 장 김기한, 02-2156-9470
사무관 진형구, 02-2156-9475

1 **(법정 최고금리 인하)**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**종전 연 34.9% → 연 27.9%[*]로 하향 조정**

[*] 당초 **정부는 29.9%로 추진**하였으나,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**정무위 논의과정**에서 **최고금리 인하폭을 확대**키로 함

○ **(적용 대상)** 기존 계약은 소급하지 않되, 계약이 **신규 체결·갱신·연장[*]**되는 경우에는 **인하된 최고금리**를 **적용**

[*] 그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대출연장을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왔으나, 최근 이를 계약 연장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리인하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

- 아울러,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해 **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공백기**('16.1.1일~법 시행전) **중 성립된 계약**에 대해서는 **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**(34.9%)**를 적용**

○ **(유효기간)** '18.12.31일까지 적용

➡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**330만명(약 7,000억원 규모)의 이자부담이 경감**될 것으로 **예상**

2 **(대부업협회 관리·감독)** 여타 법정 협회(금융투자협회 등)와 같이 「대부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**대부업협회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리·감독근거 마련**

※ 시행시기 : 공포 즉시(다만, 협회 관리·감독은 공포 후 3개월)